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0

발의연월일: 2020. 6. 10.

발 의 자:이종성·정운천·윤창현

김영식 · 권성동 · 허은아

권명호 · 김미애 · 전주혜

이 용 • 이종배 • 김석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폭염 속에 어린이집통학버스에서 영유아가 방치되거나 어린이집 하 원 시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유아를 잘못 인계하는 등 어린이집 등·하원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육교직원의 책무라는 포괄적인 주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, 시행규칙에 등원·퇴원 차량 운행에 관한 구체적인 안 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·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등·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 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 로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33조의3 신설). 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3(등·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등·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·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,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3조의3(등·하원 시 영유아 안
	전관리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
	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・하
	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
	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	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
	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
	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
	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
	야 하고,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
	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
	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
	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에 관한
	<u>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</u>
	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	<u> 정한다.</u>